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29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김한규・박상혁・박정현

이기헌 • 박민규 • 진선미

위성락 • 모경종 • 강경숙

강유정 · 정을호 · 윤호중

조 국 · 민병덕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 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·가입·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 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·가입 및 활동 제14조의2제5항 중 "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·가입·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"를 "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"로, "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"을 "하여서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2조의5(보복조치의 금지) 가맹	제12조의5(보복조치의 금지)			
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	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	
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				
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・용				
역의 공급이나 경영·영업활동				
지원의 중단, 거절 또는 제한,				
가맹계약의 해지, 그 밖에 불이				
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				
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				
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				
니된다.				
<u><신 설></u>	1.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			
	업자단체의 구성·가입 및 활			
	<u>동</u>			
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	$2. \sim 4.$ (현행 제 1 호부터 제 3			
	호까지와 같음)			
제14조의2(가맹점사업자단체의	제14조의2(가맹점사업자단체의			
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) ①	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) ①			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가맹본부는 <u>가맹점사업자단</u>	⑤ <u>가맹계약을 체</u>			
체의 구성・가입・활동 등을	<u> 결하는 경우</u>			
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				

<u>익을</u> 주	는 행위	를 하	<u>거나</u>	가맹
점사업/	사단체에	가입	또는	: 가
입하지	아니할	것을	조건	으로
<u>가맹계약</u>	약을 체점	결하여/	서는	아니
된다.				

 <u>하여서는</u>